

연천군 읍·면 지도담당 규정

[전문개정 1995. 3. 20]
훈령 제224호]

일부개정 1995. 8. 30 훈령 제 229호
일부개정 1997. 1. 21 훈령 제 241호
일부개정 1998. 10. 16 훈령 제 276호
일부개정 2000. 3. 20 훈령 제 299호
일부개정 2001. 4. 20 훈령 제 338호
일부개정 2001. 11. 19 훈령 제 348호
일부개정 2003. 4. 14 훈령 제 361호
일부개정 2007. 1. 16 훈령 제 398호
전문개정 2007. 5. 17 훈령 제 409호
일부개정 2011. 3. 14 훈령 제 444호
전부개정 2012. 6. 28 훈령 제 465호
일부개정 2013. 4. 1 훈령 제 475호
일부개정 2013. 8. 12 조례 제31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4. 2. 14 훈령 제 485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5. 2. 22 훈령 제 492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7. 1. 2 훈령 제 508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3. 4 훈령 제 527호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19. 4. 11 훈령 제 528호
일부개정 2020. 2. 21 훈령 제 540호
일부개정 2021. 1. 4 훈령 제 550호
일부개정 2023. 1. 16 훈령 제 559호
일부개정 2024. 4. 9 훈령 제 569호
일부개정 2024. 7. 25 훈령 제 5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천군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지원의 책임소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 연천군의 실·국·원·소장,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담당 읍·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6>

제3조(지도) 읍·면 지도담당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읍·면 지도담당”이라 한다)은 일제 지도가 필요한 공통사항과 군수가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읍·면에 출장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건의) 읍·면 지도담당은 제3조의 지도결과를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조) 읍·면장과 읍·면 지도담당은 읍·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긴밀히 연락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9. 4. 11 훈령 제528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1 훈령 제5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4 훈령 제550호>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6 훈령 제55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훈령 제569호>

이 규정은 2024.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5 훈령 제571호>

이 규정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 7. 25>

읍·면 지도담당(제2조 관련)

구 분	읍·면 지도담당			비 고
	국·원·소장	과장·사업소장		
		정	부	
연천읍	문화관광국장	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곡읍	산업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건축과장	
군남면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장	
청산면	안전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백학면	산업복지국장	건설과장	보건사업과장 기술보급과장	
미산면	문화관광국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왕징면	문화관광국장	관광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신서면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중 면	산업복지국장	농업정책과장	세무과장 의료지원과장	
장남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총괄과장	농업개발과장	